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G 보

제40호 2026. 10. 7.(수)

입법예고

광양시 조례 제2026-2323호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1
광양시 조례 제2026-2324호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광양시 조례 제2026-2325호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광양시 조례 제2026-2326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광양시 조례 제2026-2327호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22
광양시 조례 제2026-2328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광양시 조례 제2026-2329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광양시 조례 제2026-2330호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
광양시 조례 제2026-2331호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	43
광양시 조례 제2026-2332호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광양시 조례 제2026-2333호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6
광양시 조례 제2026-2334호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광양시 조례 제2026-2335호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64
광양시 조례 제2026-233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73

입법예고

광양시 공고 제2026-2136호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	---	----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2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5
광양시 고시 제2026-2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6
광양시 고시 제2026-255호	시도 대3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7
광양시 고시 제2026-2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90
광양시 고시 제2026-259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91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6-2145호 공시송달공고 93

회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3호

붙 임 :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문서를 포함한다.
 - 가.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및 업무협약서
 - 나. 비구속적 의사 표시 수단으로 작성된 의향서(LOI)
3.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4. “재정수반형 협약”이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시의 예산 지원, 재산 사용·수익 허가, 인력 지원 등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 및 시 조례에 따라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으로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주민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교통·건설 개선 및 도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협약 내용의 타당성, 소요예산 및 추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재정수반형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재정검토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 이익 및 행정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 내용, 추진사항, 협약 기간, 주관부서 및 변경 사항
2. 협약 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
3. 협약 종료·취소 사유 및 후속 조치사항



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행·평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협약 관리의 총괄부서는 시장이 지정하며,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협약 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7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및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수반형 협약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가 추가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사항, 평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의회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
2. 협약 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경우
3. 협약의 필요성이 없거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9조(시민 공개) 시장은 주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추진·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수반형 협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를」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4호

붙 임 :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 협의·조정
 3.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홍보 및 방문 활동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 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0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지원
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사무소(임시사무소 포함) 건축비, 임차료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5.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및 개선
6.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7.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 가족형태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2. 이사 비용 등 이주에 소요된 경비



3. 숙소 임대료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배우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상담 지원
6. 자녀의 보육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시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이전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5호

붙 임 :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국세,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7조의3(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제7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광양시 조례 제1508호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의2 및 제7조의4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위원(재위촉·재임명된 위원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재위촉된 위원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청 럽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광양시 『
』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제7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국세,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2. 본인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 <u>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u>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u> <u>5.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6. 국세,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 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u>
<u><신 설></u>	<u>제7조의3(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제7조</u>



제7조의2(위촉 위원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부칙(2017. 7. 5. 조례 제1508호)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의2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4(위촉 위원의 해제)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2017. 7. 5. 조례 제1508호)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4-----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 소 속
○ 직 위
○ 성 명

위 본인은 평양시 []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평양시 라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제7조제2(위촉 위원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재산성공을 받고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공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조 미보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복종형의 공판 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복종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유죄 판결을 받은 직방제외수임을 제정하고 있는 사람

2. 본인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관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공, 향공이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5.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관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평양시장 귀하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6호

붙 임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⑦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u>다만, 재난상황 등으로</u> <u>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u> <u>로 심의할 수 있다.</u>	⑧ ----- ----- ----- . <단서 삭제>
⑨ 심의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 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해야 한다.	<삭 제>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 ⑧ (생 략) <신 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
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7호

붙 임 :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 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3. “병원 동행 서비스”란 이용자가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이용자를 동행하며 이동, 내원 및 병원 접수·수납, 약국 이용, 입·퇴원 절차 지원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동행 매니저”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리인”이란 이용자를 대신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법」 제767조에 따른 배우자, 혈족, 인척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지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
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원 동행 서비스의 지원에 관하여 이용자의 소득 수준, 장
애 정도, 나이, 긴급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
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 간호사)
5.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제6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시장은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기관보호서비스·재가방문서비스·활동보조 서비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위탁계약에는 안전관리, 사고보고, 보험가입,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병원 동행 서비스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8호

붙 임 :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업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해당 기업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 <u>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u> <u>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u> <u>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④ <u>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9호

붙 임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이자차액보전”이란”을 ““이차보전”이란”으로 한다.

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성장기반 조성”을 “보호와 경영 안정 지원, 자주적 육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 등)”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 안정 지원, 자주적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9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실태조사
2. 호신용품,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지원
3. 사업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입 감지 장치 등 안전설



비 설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 범죄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광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 및 범죄 취약지역 내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이자차액 보전 지원)”을 “(이차보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이차보전”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양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 <u>이자차액 보전</u> ”이란 소상공인이 용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용자금</u> ”이란 <u>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u> 5. “ <u>이차보전</u> ”이란 ----- --.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u>보호와 경영 안정 지원, 자주적 육성</u>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u>지원계획 수립 등</u>) ① 시장은 <u>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제5조(<u>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u>) ① 시장은 <u>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 안정 지원, 자주적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신설>

한다.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법 제
12조의9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
가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전
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실태조사

2. 호신용품, 비상벨 등 범죄예
방 물품 지원

3. 사업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
전(CCTV), 침입 감지 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 범죄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u>대상을 선정할 때 광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 및 범죄취약지역 내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제9조(이자차액 보전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u>이자차액 보전</u>(이하 “<u>이차보전</u>”이라 한다)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지원 대상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 ④ (생략) <u><신설></u>	제9조(이차보전 지원) ① ----- ----- ----- ----- <u>이차보전</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u>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양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제16조 (생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0호

붙 임 :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행정력과 예산의 중복 및 낭비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민관협치 및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는 센터 등의 기관을 말한다.
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공동체 발굴 및 지원, 행정과 주민의 협력기반 구축, 주민 역량강화, 주민 의견 대변 등 다양한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운영,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의 각 부서와 중간지원조직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유사한 사업이나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도·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자율성을 지니고 민주적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기준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담당부서 간 연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2. 유사·중복 기능의 연계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3. 주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4.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 공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담당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간 소통 확대를 위한 간담회, 교육 및 워크숍 운영
6. 중간지원조직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 ① 지정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 및 각 중간지원조직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호 간의 사업 정보와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 1명은 시장이 하며, 위촉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분야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그 밖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광양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2명의 공동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2.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2명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
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1호

붙임 :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의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 이용데이터의 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공공시설 운영정책 및 관광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문화·체육·복지·교육·공원·휴양시설과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광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그 밖에 시 관내에서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시장이 관리하거나 지정·고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이용데이터"란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방문객 수, 이용시간, 체류시간, 이용빈도, 이동특성 등 통계자료를 말한다.
4. "관리·활용"이란 이용데이터의 구축, 수집, 저장, 분석, 제공 및 활



용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이용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통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용데이터의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용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이용데이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데이터 구축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 이용데이터 저장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이용데이터 제공 및 활용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위법령의 개정·정비 동향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데이터의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이용데이터의 수집 범위, 제7조에 따른 플랫폼의 구축·운영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용데이터의 활용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용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5. 이용데이터 관리·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윤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직접 보유하지 아니한 자료는 관계기관 또는 사업자와의 협약이나 구매 등의 방법으로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

1.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적외선 계수기 등 자동계수시스템을 통한 수집
2.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약을 통한 이동통신 및 위치기반 통계자료



의 제공

3. 공공 와이파이 이용정보

4. 주차장 이용자료

5. 예약 및 입장시스템 자료

6.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연구기관이 제공하는 통계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자료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통계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부득이하게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③ 관계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데이터의 관리에 관하여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스마트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플랫폼 구축) ① 시장은 공공 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스마트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플랫폼에는 제6조에 따라 수집한 이용데이터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연계·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직접 보유하지 아니한 정보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취득한다.

1.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 방문객 현황

2.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 통계



3. 관광객 이동경로 및 체류시간 현황
4. 공영주차장 이용현황
5. 대중교통 이용현황
6. 숙박시설 이용현황
7. 축제 및 행사 방문객 현황
8. 관광 소비 및 상권 분석자료
9. 공공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반 센서 정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이용데이터의 활용 및 협력) ① 시장은 이용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운영의 개선
2. 관광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축제 및 행사의 기획
4. 예산편성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5. 관광상품의 개발
6.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 관련 정책의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이용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한국관광공사,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과 데이터 연계·공동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활용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데이터의 공개) ①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한 이용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이용현황
2. 관광시설 등별 방문객 수
3. 계절별 및 월별 이용현황
4. 관광객 체류시간
5. 축제 및 행사 방문객 현황
6. 관광통계 분석자료
7. 그 밖에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통계자료

③ 시장은 공개된 데이터를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이 정책개발, 연구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이용데이터의 관리·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데이터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통계자료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부득이하게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집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하여 이용데이터의 관리·활용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시장은 이용데이터의 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2호

붙 임 :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 다만, 보 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 ----- ----- <u>한 차</u> <u>례만 연임할 수 있다</u> . ----- ----- ---
제8조(회의) ① ~ ③ (생략)	제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 음)
<u>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u>	<u><삭 제></u>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 원인 경우</u>	
2. <u>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u>	
3. <u>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	
4. <u>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신 설></u>	<u>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3호

붙 임 :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수행 과정에서 영유아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폭행 및 인권침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양시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을 존



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수립하는 광양시 보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상담·심리치료·노무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건강·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피해 보육교직원의 보호 및 업무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휴가·교육·평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및 보육 공백 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권익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3. 보육교직원의 권익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4.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복리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
6. 보육교직원의 휴가·교육·병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사업
7.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담 내용과 피해 관련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지원대상 선정·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4호

붙 임 :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u>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u> 신청서와 <u>별지 제2호서식</u> 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 ----- <u>별지 제1호서식 및 제1-1호서식</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5호

붙 임 :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광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바람·낙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여 예방 조치가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방법·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나무병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지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노유자시설의 주민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으로서 관리주체가 명확한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이 20 센티미터 이상인 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지나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단독 소유자인 경우에는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

④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신청자 및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의 소유권 또는 경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지원 결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														
신청 사항	위 치	지 번: (지목:)													
		소유자: (연락처:)													
	신청 사유														
	위험수목 현 황	연번	나무종류	나무높이 (m)	가슴높이지름 (cm)	신청내용	비고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위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집·이용·제공 목적</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공받는 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유·이용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험수목 처리 작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td> </tr> </tbody> </table>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항 목	수집·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위험수목 처리 작업자	3년
항 목	수집·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위험수목 처리 작업자	3년												



[별지 제1호서식 붙임]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전체 모습 사진	상세 모습 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 수종 및 수량:
- 신청사유:
- 신청내용:

본인은 위 위험수목의 (공동)소유자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대하여 신청 사항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붙임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공동소유인 경우만 해당).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소유자(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 수목(토지)위치: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 동의 필요)

연번	성명	주소(동 호수 명기)	서명(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대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소유자(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의정기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3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
불 임 : 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제2조(「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의회”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3조(「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개정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일
인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생략) 1. (생략) 2. 「지방자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u>전라남도</u> 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u>도의회</u> 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u>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의회</u> ----- ----- ② (현행과 같음)

2.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략)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도의회</u>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의회</u> ----- -----



3. (생략)

영수 번호	제 호	지형심리통보심금형문서			제외기간
					15 일
요청대상인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000-000		전화번호	
	영구내물	☐ 서명 ☐ 인쇄		☐ 상해	
	보유금과 금 종 기 종	금 종 기 종	제 외 기간		
상 해 장 소				상 해 장 소	
상 해 부 진 금 종 기 종					
*영수번호로 요청할 때 보장은 다음과 같은 조항, 제6조의 규정 에 의해서 적용 되어 청구합니다. 제 외 기간 영구인 (인) 물류서비스의 제공					
영수번호 1. 제6조의 규정 : 지형심리 통보심금 (1부, 지형심금 1부) 2. 제6조의 제6조의 규정 : 상해금과 (1부, 제6조제1항 1부, 제6조제2항 1부) 3. 영구인의 통보금 (1부/제6조제2항 1부)					
상지자는 <u>지형심리통보심금</u>에 대한 보장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제 외 기간 ☐ 영구인 물류서비스의 제공					

3. (현행과 같음)

[illegible]

3.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illegible]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주요 내용
 - 제5조(존속기한)
 - (당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변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입법 예고

- 예고기간: 2026. 10. 1. ~ 10. 21.(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2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산단택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로 410,
광양커뮤니티센터 4층 산단택지과
- 전 화 : 061-797-3118
- 팩 스 : 061-797-2597 (팩스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d940206@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 ----- 2031년 12월 31일-----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985-14
	성명	박복례
점용지역	위치	옥룡면 죽천리 1304 일원
	면적	약 13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농작물 경작
점용기간		당초: 2016. 6. 1.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715
	성명	김종규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1205-8 일원
	면적	약 16㎡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단독주택 진출입로
점용기간		당초: 2011. 9. 30.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6-255호

시도 대3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읍 세풍리, 도월리 일원 ‘시도 대3호선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대해,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신설	시도	대3호선	시도 대3호선	광양읍 세풍리 도월리	129,350㎡	광양읍 세풍리 (1305-2)	광양읍 도월리 (605-56)	광양읍 세풍리 도월리	2.24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이동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 교통환경 개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3년
(2026. 10. ~ 2029. 9.)
※ (토지보상, 공사추진 등]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총 235필지 A=171,143㎡ (편입: 129,350㎡)
* 상세: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광양시청 도로과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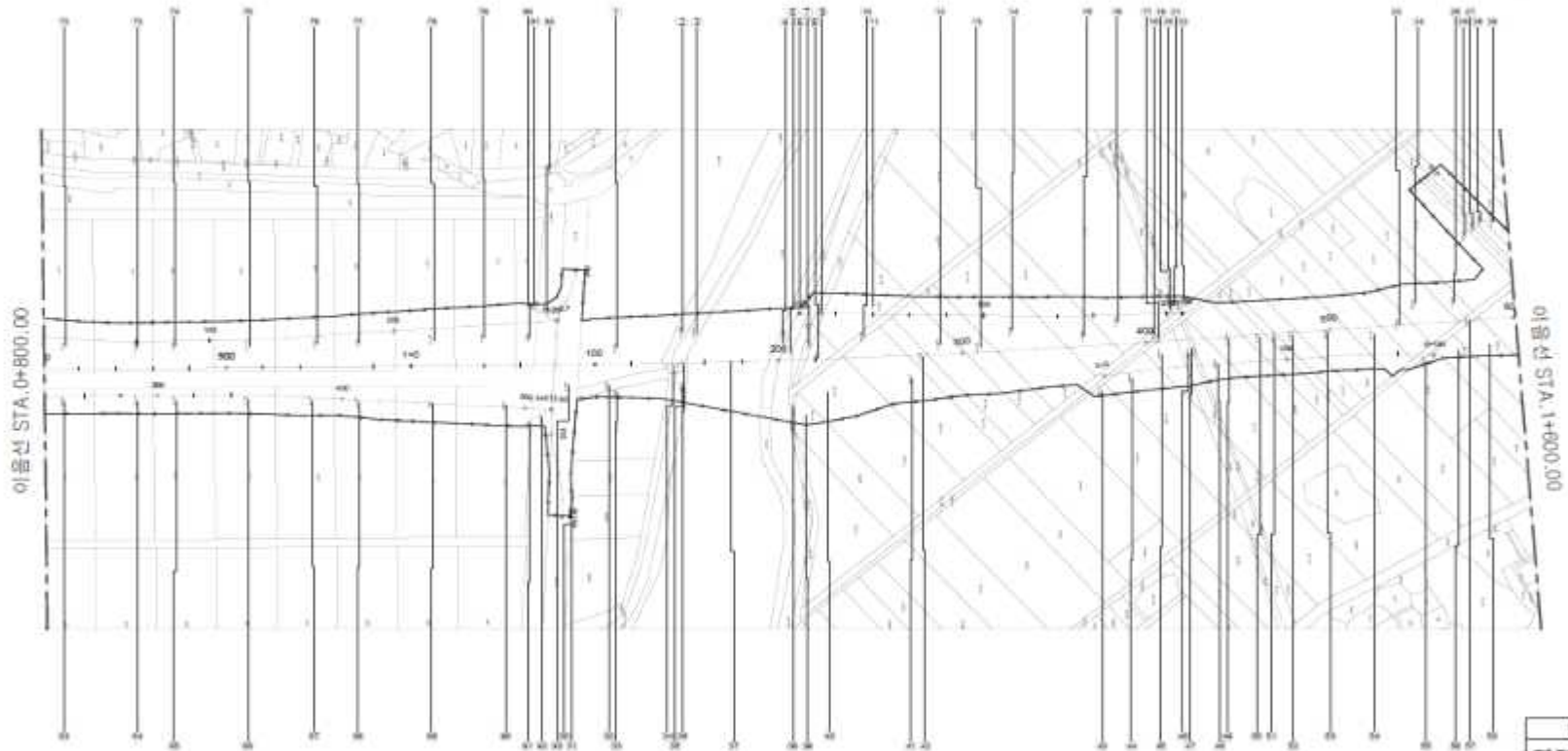


광양 새룡산단-광양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용 지 도 (2) [본선 STA.0+800.00~STA.1+6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새룡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불리



범 례	
---	영토 분지경계
---	면적 분지경계
---	행정구역경계

광 양 시 (주) 전 일 (주) 두번기술공사	사 업 명	광양 새룡산단-광양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위치정보		도면명	용 지 도 (2)
	시 설/용구							속 력	HONR		
	건설분야	토목	건설단계	설치설계	도면번호	2024.08	설계용 계획	도면번호	00000001-002	도면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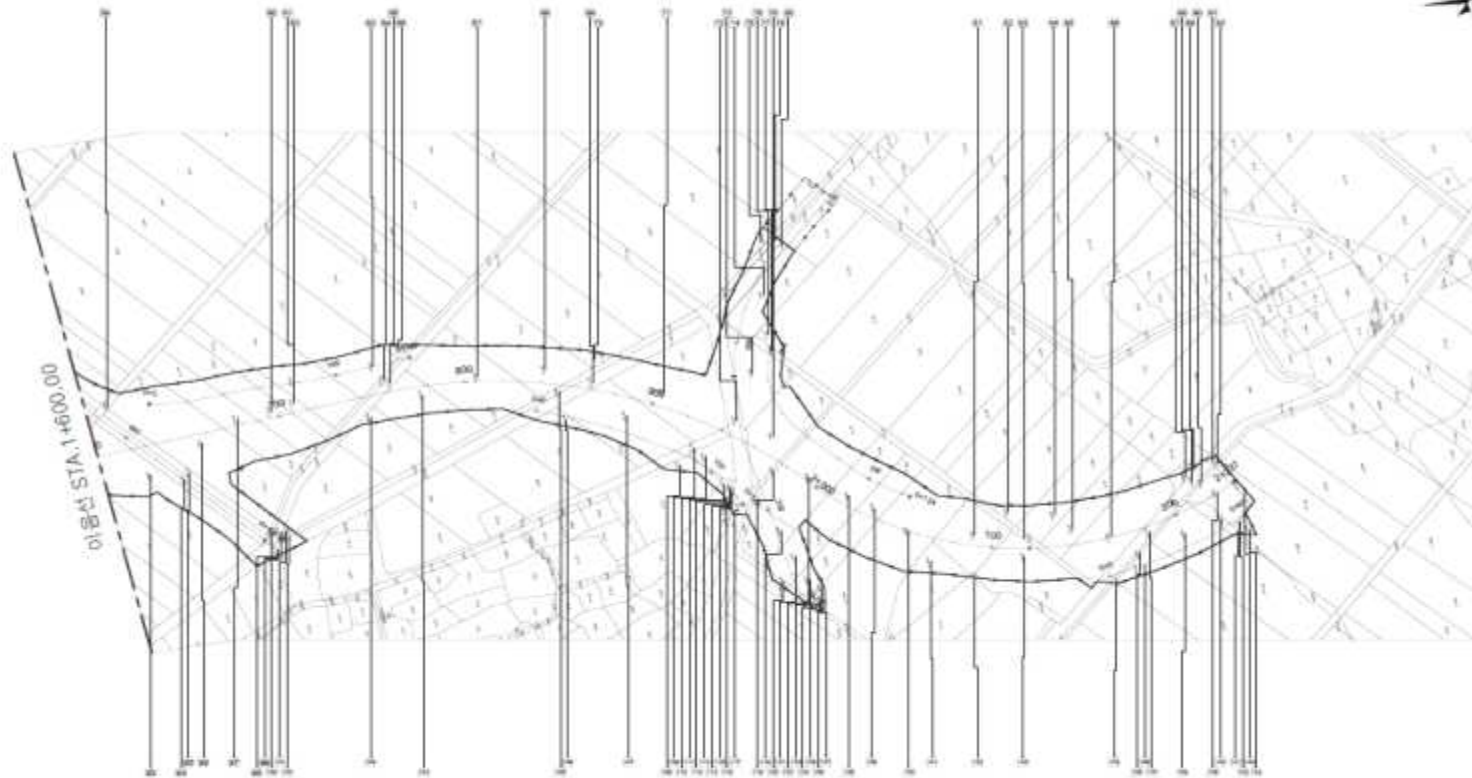
작성일자: 2024.08.01



광양 새동산단~광양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용 지 도 (3) [본선 STA.1+600.00~STA.2+237.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번	례
---	당초 용지경계
---	현경 용지경계
---	행동구역경계

광 양 시 (주) 진 일 (주) 무반기술공사	사 일 명	광양 새동산단~광양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획일		도면명	용 지 도 (3)
	사 일/공구									축 척	NONE	도면번호	0099901-000
	건설분야	토목	건설단계	설치설계	작성일자	2024.08	작성인	김민준	작성부서	토목과	도면번호	0099901-000	현행번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성명	광양읍사무소(광양읍장)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81-2 외 2필지 일원
	면적	약 27,78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제22회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 개최
점용기간		2026. 10. 12. ~ 2026. 10. 31.(20일간)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성북안길 20-4	2026. 10. 7.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 무 구 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성북안길 20-4	2026. 6. 8. (2026. 9. 30.)	2026. 10. 7.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원인 및 처분내용

연 번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반사항	미배달사유
1	박*재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63-1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무허가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증축(18m ²)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5. 안내사항

- 단지 내 공용공간인 주차장을 불법점유하여 무단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함이 확인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하오니, 2026. 10. 12.(월)까지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에 따라 고발 및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건축과(☎061)797-2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